

재고자산

100302 조현익 교수 강의

1. 재고자산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

재고자산(inventories)이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 ①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
- ②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중인 자산
- ③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은 상품 계정(매매업의 경우) 또는 제품 계정(제조업의 경우)를 사용하여 회계처리한다. 한편 제조업의 경우에는 판매를 위하여 생산중인 자산으로 재공품 계정 및 생산에 사용될 원재료 계정을 사용한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의 세부계정(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을 열거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이라는 과목으로 통합 표시할 수 있다. 본서에서는 상황에 따라 상품계정을 사용하기도 하고, 재고자산 계정을 사용하기도 할 것이다. 한편 제조업의 회계처리는 원가회계에서 다루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상품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의 회계처리만 설명하기로 한다.

특정자산을 매입하였을 때 상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이 **정상적인 영업과정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외형상 동일한 자산이더라도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이 무엇이냐에 따라 당해 자산의 분류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땅을 매입하였을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땅은 재고자산(용지 계정)으로 분류하고, 일반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 공장건물의 부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땅은 유형자산(토지계정)으로 분류하며,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땅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양돈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 식육으로 사육하는 돼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나, 번식을 위한 종돈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 또는 생산 중인 자산이 아니므로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2. 재고자산의 측정에 대하여 설명

상품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이다.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¹⁾), 매입운임, 하역료 및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는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을 매입할 때 부수하여 발생한 원가를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할 것인지, 아니면 발생시점에서 비용으로 인식할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국제회계기준에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나, 회계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상품 등을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기까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라면 상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발생시점에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기타원가는 발생시점에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당해 상품을 판매할 때 매출원가로 대체하면서 비용으로 인식한다.

제7장의 매출채권의 조정에서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및 매출할인을 설명한 바 있다. 매출에누리,

¹ 우리나라에서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수출하면 원재료 수입 과정에서 부담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환급제도가 있다. 관세환급제도를 적용받는 원재료를 수입할 때 기업이 납부한 관세는 원재료의 매입원가에 가산하지 않는다.

매출환입 및 매출할인이 발생한 회사의 상대방은 매입에누리, 매입환출 및 매입할인이 발생한다. 상품을 매출한 기업이 매출에누리 등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매출의 차감으로 회계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상품을 매입한 기업은 매입에누리 등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매입의 차감으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매입에누리 등은 상품 거래를 제4장에서 설명했던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중 어떤 방법으로 장부기록 하는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다소 상이하다.

(1) 매입에누리 및 매입환출

매입에누리(purchase allowance)란 매입한 상품에 결함이나 파손 등이 있어서 판매자가 상품의 값을 깎아 주는 것을 말하며, 매입환출(purchase returns)이란 매입한 상품에 결함이나 파손 등이 있어서 판매자에게 상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른 매입에누리 및 매입환출의 회계처리는 <표 1>과 같다.

<표 1> 매입에누리 및 매입환출의 회계처리

거래	계속기록법 적용시	실지재고조사법 적용시
상품 매입시	(차) 상품 XXX (대) 매입채무 XXX	(차) 매 입 XXX (대) 매입채무 XXX
매입에누리 또는 매입환출 발생시	(차) 매 입 채 무 XXX (대) 상 품 XXX	(차) 매 입 채 무 XXX (대) 매입에누리(환출)XXX*

*매입 계정을 직접 감소시키는 분개를 해도 무방하다.

계속기록법으로 상품매매거래를 기록하는 경우 매입에누리 또는 매입환출이 발생하면 이미 인식한 상품의 취득원가와 매입채무를 각각 그 만큼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한다. 한편 실지재고조사법으로 상품매매거래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매입에누리나 매입환출이 발생할 때 매입채무를 감소시키면서 대변으로 매입에누리 또는 매입환출 발생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바람직한 회계처리라고 볼 수는 없다.

(2) 매입할인

매입할인(purchase discount)이란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한 후 조기에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할 경우 거래처에서 일정액을 깎아 주는 것을 말한다. 매입할인의 회계처리도 상품 매매거래를 계속 기록법으로 회계처리하는지, 아니면 실지재고조사법으로 회계처리하는지에 따라서 <표2>와 같이 다르다.

<표 2> 매입할인의 회계처리

거래	계속기록법 적용시	실지재고조사법 적용시
상품 매입시	(차) 상품 XXX (대) 매입채무 XXX	(차) 매 입 XXX (대) 매입채무 XXX
매입할인 발생시	(차) 매 입 채 무 XXX (대) 현 금 XXX 매입할인 XXX*	(차) 매 입 채 무 XXX (대) 현 금 XXX 매입할인 XXX**

*계속기록법에서 인식한 매입할인은 결산시점에서 매출원가와 상계처리한다.

**실지재고조사법에서 인식한 매입할인은 매입계정을 직접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해도 무방하다

몇몇 회계원리 책에서는 상품매매거래를 분개할 때 몇 개의 계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2분법, 3분법, 9분법 등의 방법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독자들은 굳이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필요가 없다. 상품매매거래를 분개할 때 사용하는 계정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2분법, 3분법, 9분법 등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며, 특정 분개의 방법이 몇분법인지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회계처리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제 1 **매입환출 및 매입할인의 회계처리**

당기에 설립한 A회사의 상품 매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수량	단가
외 상 매 입	100개	₩1,000
매 입 환 출	2	-
외 상 매 출	80	1,500

한편 A회사가 매입채무 지급시 매입할인 ₩3,000이 발생하였다.

[요구사항]

A회사가 상품 매매거래에 대해서 계속기록법을 적용할 경우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할 경우로 구문하여 상기상품 매매와 관련된 거래를 분개하고, 당기 매출원가와 기말 상품재고액이 얼마인지 언급하라.

풀이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매입시>			
(차) 상 품	100,000	(차) 매 입	100,000
(대) 매입채무	100,000	(대) 매입채무	100,000
<매입환출>			
(차) 매입채무	2,000	(차) 매입채무	2,000
(대) 상 품	2,000	(대) 매입환출	2,000
<매입채무 결제시>			
(차) 매입채무	98,000	(차) 매입채무	98,000
(대) 현 금	95,000	(대) 현 금	95,000
매입할인	3,000	매입할인	3,000
<매출시>			
(차) 매출채권	120,000	(차) 매출채권	120,000
(대) 매 출	120,000	(대) 매 출	120,000
(차) 매출원가	80,000		
(대) 상 품	80,000		
<결산시>			
(차) 매입할인	3,000	(차) 상품(기말)	18,000*
(대) 매출원가	3,000	매입 환출	2,000
		매입 할인	3,000
		매출 원가	77,000
		(대) 매 입	100,000
			*기말재고수량(18개) x ₩1,000=18,000

$$\begin{aligned}
 \text{매출원가} &= \text{₩}80,000 - 3,000 \\
 &= \text{₩}77,000 \\
 \text{기말상품재고액} &= \text{₩}100,000 - 2,000 \\
 &\quad - 80,000 \\
 &= \text{₩}18,000
 \end{aligned}$$

$$\begin{aligned}
 \text{매출원가} &= \text{₩}77,000 \\
 \text{기말상품재고액} &= \text{₩}18,000
 \end{aligned}$$

예제 2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계산

다음은 당기 갑회사의 상품매매와 관련된 자료이다.

총 매출액	₩10,000,000	매출운반비	₩20,000
매출에누리	150,000	매출할인	80,000
기초상품재고액	1,300,000	기말상품재고액	1,500,000
당기상품총매입액	6,400,000	매입운반비	30,000
매입환출	120,000	매입할인	130,000

[요구사항]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갑회사의 당기 매출액, 매출원가 및 매출총이익을 각각 계산하라

풀이

$$\begin{aligned}
 \text{매출액} &= \text{총매출액} - \text{매출에누리} - \text{매출환입} - \text{매출할인} \\
 &= \text{₩}10,000,000 - 150,000 - 80,000 \\
 &= \text{₩}9,770,000
 \end{aligned}$$

매출운반비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begin{aligned}
 \text{당기상품매입액} &= \text{당기상품총매입액} + \text{매입운반비} - \text{매입에누리} - \text{매입환출} - \text{매입할인} \\
 &= \text{₩}6,400,000 + 30,000 - 120,000 - 130,000 \\
 &= \text{₩}6,180,000
 \end{aligned}$$

$$\begin{aligned}
 \text{매출원가} &= \text{기초상품재고액} + \text{당기상품매입액} - \text{기말상품재고액} \\
 &= \text{₩}1,300,000 + 6,180,000 - 1,500,000 \\
 &= \text{₩}5,980,000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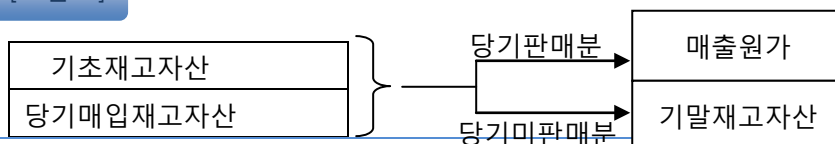
$$\begin{aligned}
 \text{매출총이익} &= \text{매출액} - \text{매출원가} \\
 &= \text{₩}9,770,000 - 5,980,000 \\
 &= \text{₩}3,790,000
 \end{aligned}$$

3. 단위원가 결정방법

3.1 재고자산의 원가배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기 중에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와 기말현재 판매되지 않고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원가(재무상태표상 기말재고자산)로 배분된다

[그림 1] 재고자산의 원가배분



기초재고자산과 당기매입재고자산을 합한 금액을 판매가능재고자산의 원가라고 하는데, 판매가능재고자산의 원가는 **당기비용(즉, 매출원가)과 기말재고자산으로** 배분된다. 제4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가 계속기록법을 이용하여 장부기록을 하는 경우에는 매출원가가 먼저 결정되고 기말재고자산은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반면, 회사가 실지재고조사법을 이용하여 장부기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말재고자산이 우선 결정되고 매출원가는 사후적으로 결정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가능재고자산의 원가가 어떻게 배분되는 우측의 (매출원가+기말재고자산)은 동일하다. 따라서 계속기록법을 적용할 경우 매출원가를 =1,000 과대(과소)계상하면, 기말재고자산이 ₩1,000 과소(과대)계상되고,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할 경우 기말재고자산을 ₩1,000 과대(과소)계상하면 매출원가는 ₩1,000 과소(과대)계상되어 결국 당기순이익이 ₩1,000과대(과소)계상됨을 알 수 있다.

3.2 단위원가 결정방법의 종류

제4장의 (예제 1)에서 상품매매기업의 장부기록 방법을 설명하면서 상품매입은 한번만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실제로 기업은 한 회계기간 동안 여러 차례 상품을 매입할 것이다. 그런데 상품의 개당 매입가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상품의 개당 매입가격이 변동되지 않더라도 매입운임 등 매입부대비용이 매입할 때마다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품의 단위당 취득원가는 동일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당기에 상품을 1개씩 두 번 매입하였는데 첫 번째 상품의 취득원가는 ₩1,000이고 두 번째 상품의 취득원가는 ₩1,200이라고 하자. 당기에 두 개의 상품 중 한 개를 판매하고 나머지 한 개를 기말 현재 보유한다고 할 때, 얼마짜리 상품을 판매했는가에 따라 당기 매출원가 및 기말재고자산은 달라진다. 만일 ₩1,000에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였다면 당기 매출원가는 ₩1,000이고 기말재고자산은 ₩1,200이 될 것이며, ₩1,200에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였다면 당기 매출원가는 ₩1,200이고 기말재고자산은 ₩1,000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외형상 두 개 상품 중 어떤 상품을 판매했는지 구분할 수 없다면 기업이 판매한 상품과 판매하지 않은 상품을 **자의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당기 순이익을 조작**할 수 있다.

취급하는 상품의 수량이 많지 않다면 판매하는 상품의 취득원가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다량의 상품매매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상품의 당초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울 것이다. 따라서 회계에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판매한 상품이 얼마에 매입한 것인지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에 계속 적용하게 함으로써 이익조작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위원가 결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1) 개별법

개별법(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은 식별되는 재고자산별로 특정한 원가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즉,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 매입원가를 파악하여 매출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개별법은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 가능한 다량의 재고자산 항목에 개별법을 적용하면 당기순이익을 자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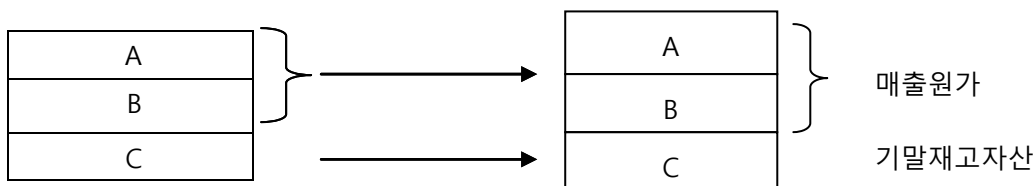
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으며, 다음에서 설명하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한다

(2)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FIFO, first-in first-out cost formula)은 먼저 매입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가장 최근에 매입된 항목이 기말재고자산을 구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당기에 상품 3개를 서로 다른 단가에 매입(WA, WB, WC의 순서대로 매입)하고 이 중에서 2개를 판매했을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매출원가 및 기말재고자산의 결정과정을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선입선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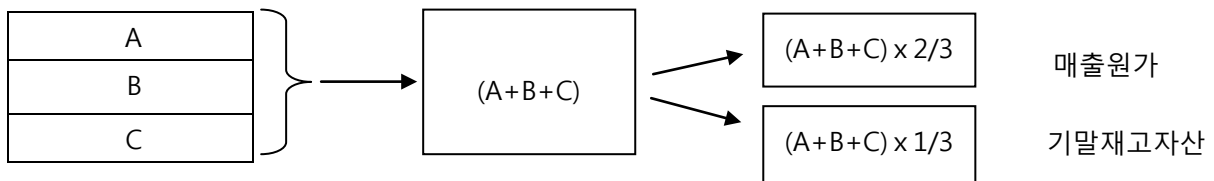


(3) 가중평균법

가중평균법(weighted average cost formula)은 기초재고자산과 당기에 매입한 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선입선출법과 달리 재고자산의 매입순서와 판매순서를 구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기에 상품3개를 서로 다른 단가에 매입(WA, WB, WC의 순서대로 매입)하고 이중 2개를 판매했을 경우 가중평균법에 의한 매출원가 및 기말재고자산의 결정과정을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가중평균법



가중평균법은 재고자산의 장부기록 방법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 부르는데, 계속기록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이라 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이라고 한다.

기업이 어떤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택하든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의 합계액은 동일하지만,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에 배분되는 금액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따라서 동종산업에 있는 두 경쟁기업 간의 재무제표를 비교분석할 때 두 기업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실질적인 경영성과가 비슷하더라도 재무제표가 보여주는 경영성과는 다를 수 있다.²

² 따라서 회계정보이용자는 주석으로 공시되는 단위원가 결정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비교하는 두 기업의 단위원가 결

한편 기업이 취급하는 재고자산의 종류가 많을 경우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 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성격이나 용도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³

예제 3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의 비교

다음은 갑회사의 당기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일 자	수 량	매입단가
기초재고자산	100개	₩1,000
당 기 매 입		
2월 10일	400	1,100
8월 10일	500	1,200
매 출		
4월 15일	300	-
11월 15일	500	-
기말 실지재고량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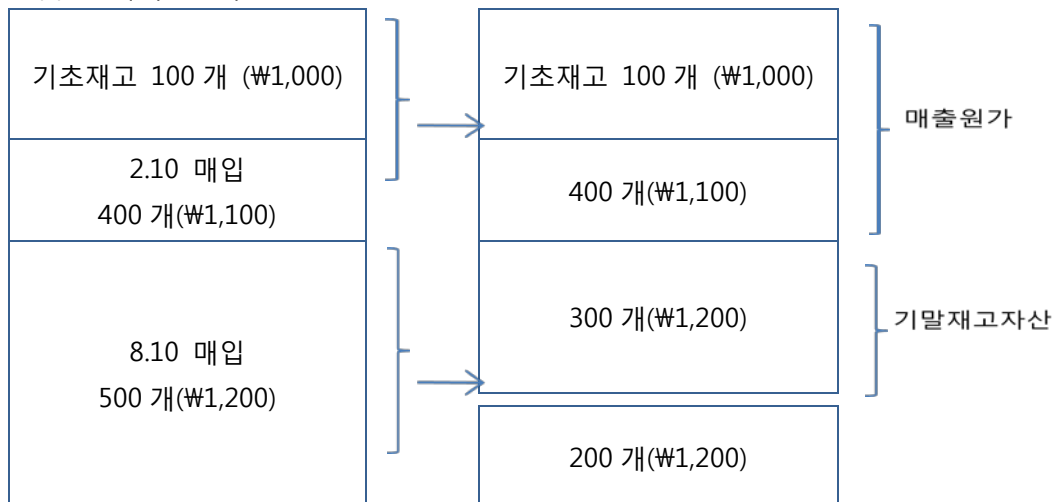
[요구사항]

다음의 각 방법에 따라 갑회사의 당기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을 구하라. 모든 계산은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하라.

- (1) 실지재고조사법, 선입선출법
- (2) 실지재고조사법, 총평균법
- (3) 계속기록법, 선입선출법
- (4) 계속기록법, 이동평균법

풀이

(1) 실지재고조사법, 선입선출법



기말재고자산 200개는 8월 10일 매입분 500개 중 200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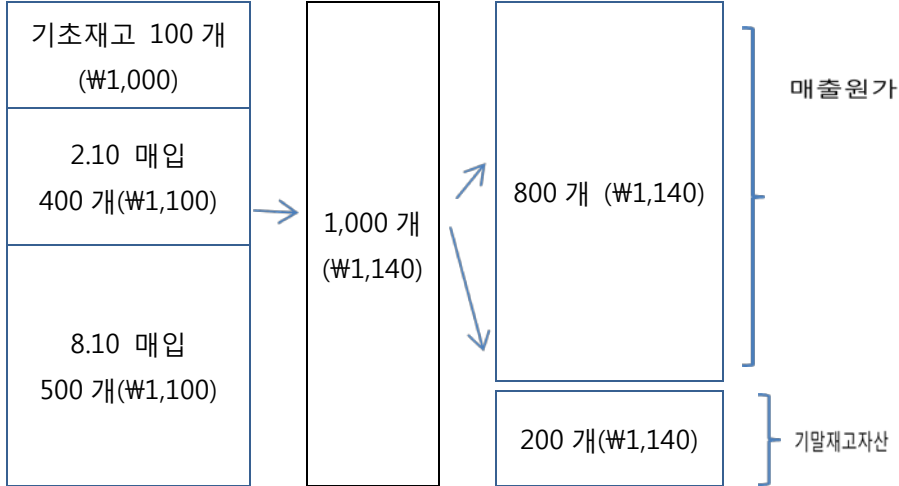
정방법이 상이하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³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LIFO, Last in first-out cost formula)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입선출법을 적용 하던 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후입선출법 대신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으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변경 해야 한다.

$$\text{기말재고자산} = 200\text{개} \times \text{₩}1,200 = \text{₩}240,000$$

$$\text{당기매출원가} = \text{₩}100,000(\text{기초재고자산}) + (440,000 + 600,000)(\text{당기매입액}) - 240,000(\text{기말재고자산}) = 900,000$$

(2) 실지재고조사법, 총평균법



$$\text{총 평균 단가} = (\text{₩}100,000 + 440,000 + 600,000) / 1,000\text{개} = \text{₩}1,140$$

$$\text{기말재고자산} = 200\text{개} \times \text{₩}1,140 = \text{₩}228,000$$

$$\text{당기매출원가} = \text{₩}100,000(\text{기초재고자산}) + (440,000 + 600,000)(\text{당기매입액}) - 228,000(\text{기말재고자산}) = \text{₩}912,000$$

(3) 계속기록법, 선입선출법

일 자	입 고		출 고		잔 고		
	수량	단가	수량	단가	수량	단가	금액
기초재고					100	1,000	100,000
2. 10.	400	1,100			200	1,000	100,000
					400	1,100	440,000
4. 15.			100	1,000	200	1,100	220,000
			200	1,100			
8. 10.	500	1,200			200	1,100	220,000
					500	1,200	600,000
11. 15.			200	1,100	200	1,200	240,000
			300	1,200			

잔고란의 마지막 금액이 기말재고자산금액이 된다.

$$\text{기말재고자산} = \text{₩}240,000$$

$$\begin{aligned} \text{당기매출원가} &= 100 \times \text{₩}1,000 + 200 \times \text{₩}1 \times 100 + 200 \times \text{₩}1,100 + 300 \times \text{₩}1 \times 200 \\ &= \text{₩}900,000 \end{aligned}$$

즉, 출고란에 표시되는 출고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합계가 매출원가이다.

(4) 계속기록법, 이동평균법

일 자	입 고		출 고		잔 고		
	수량	단가	수량	단가	수량	단가	금액
기초재고					100	1,000	100,000
2. 10	400	1,100			500	1,080	540,000
4. 15.			300	1,080	200	1,080	216,000
8. 10.	500	1,200			700	1,166	816,000
11. 15.			500	1,166	200	1,166	233,000

잔고란의 마지막 금액이 기말재고자산가액이 된다. 다만, 이동평균단가의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기말재고자산가액을 계산한다.

$$\text{기말재고자산} = \text{₩}816,000 - 500 \times \text{₩}1,166 - \text{₩}233,000$$

출고란에 표시되는 출고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합계가 당기매출원가이다.

$$\text{당기매출원가} = 300 \times \text{₩}1,080 + 500 \times \text{₩}1,166 = \text{₩}907,000$$

3.3 단위원가 결정방법의 선택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위의 (예제3)에서 단위원가를 선입선출법으로 결정하는지, 또는 가중평균법으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가 달라짐을 보았다. (예제3)에서는 매입할 때마다 매입단가가 상승(즉, 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장부기록방법	과 목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실 지 재 고 조 사 법	기말재고자산	₩240,000	₩228,000
	매 출 원 가	<u>900,000</u>	<u>912,000</u>
	계	₩1,140,000	₩1,140,000
계 속 기 록 법	기말재고자산	₩240,000	₩233,000
	매 출 원 가	<u>900,000</u>	<u>907,000</u>
	계	₩1,140,000	₩1,140,000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기 중에 물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매출원가, 법인세부담액 및 당기순이익의 크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기말재고자산 :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 매 출 원 가 :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 법인세부담액 :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 당 기 순 이 익 :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선입선출법의 경우에는 최근의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재고자산이 기말재고자산을 구성하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가중평균법에 비해서 기말재고자산가액이 더 크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그 만큼 작게 보고되어 당기 순이익이 더 많이 표시되며, 법인세부담액도 가중평균법에 비하여 더 많다. 물론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등호 방향은 반대가 된다.

4.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감모손실

4.1 재고자산평가손실-저가법적용

어떤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했는지에 관계없이 기말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의류매매업을 하는 기업이 가을에 모피코트를 10벌 매입(한 벌당 매입단가는 백만원 가증)하여 결산일(12월 31일) 현재 10벌을 판매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다고 할 때 기말상품재고액은 ₩10,000,000일 것이다. 그런데 담당자의 취급부주의로 모피코트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재무상태표에 기말상품재고액을 ₩10,000,000으로 보고할 수 있는가? 손상으로 인하여 모피코트의 상품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 값을 받고 모피코트를 판매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모피코트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2월 31일까지 판매하지 못한 모피코트는 그 이후에 정상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매입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할인판매할 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겨울이 되기 전에 모피코트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해가 바뀐 1월에 굳이 모피코트를 장만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연도 1월말이나 2월초가 되면 봄 신상품을 출시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결산일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피코트 10벌은 할인판매시장에 헐값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재무상태표에 기말상품재고액을 ₩10,000,000으로 보고할 수 있는가?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zavle value)⁴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재고자산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된 경우 또는 판매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다면 당초 취득원가로 기록한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를 저가법(lower of cost or market)이라고 하는데,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의 결산수정분개(실지재고조사법 적용시)는 <표 4>와 같다.

<표 4>

구분	회계처리			
일반적인 결산 수 정분개	(차) 상품(기말) 매출원가	xxx xxx	(대) 상품(기초) 매입	xxx xxx
저가법적 용	(차)재고자산평가손실	xxx	(대) 재고자산평가충당 금	

저가법 적용시 차변의 재고자산평가손실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비용의 구분을

⁴ 순실현가능가치란 정상적인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대변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평가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직접 차감한 순액으로 재고자산을 표시할 수도 있다.

한편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에 순실현가능가치가 회복되었다면 최초의 정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의 회계처리는 중급회계에서 다루며, 회계원리에서는 평가손실의 인식만 설명한다.

예제 4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

갑 회사의 기말상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취득원가 ₩1,000,000 판매가액 ₩1,100,000
 판매시까지 소요비용 ₩300,000

한편 갑회사의 기초상품재고액은 ₩500,000이며, 당기상품매입액은 ₩4,000,000이다.

[요구사항]

1.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기말상품재고액과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산하라.
2. 2. 갑회사의 저가법평가를 포함한 상품의 결산수정분개를 하여라

☞ 풀이

1. 상품의 시가(순실현가능가치)=판매가액-판매시까지 소요비용
 $=₩1,100,000-300,000$
 $₩800,000 < ₩1,000,000$ (취득원가)

즉, 상품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기 때문에 순실현가능가치 ₩800,000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기말상품재고액이다.

재고자산평가손실=취득원가-순실현가능가치
 $=₩1,000,000-800,000=₩200,000$

2. <일반적인 기말상품 결산수정분개>

(차) 상 품 (기말)	1,000,000	(대) 상 품 (기초)	500,000
매 출 원 가	3,500,000	매 입	4,000,000

<저가법 평가분개>

(차) 재고자산 평가손실	200,000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200,000
(매출원가에 포함)			

참고로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상품재고액 (500,000)	매출원가 (3,500,000)*
당기상품매입액(4,000,000)	재고자산평가손실(200,000)
	기말상품재고액(800,000)

*매출원가는 끼워넣기 수치로 결정한다.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매출원가가 ₩6,500,000+200,000=₩3,700,000으로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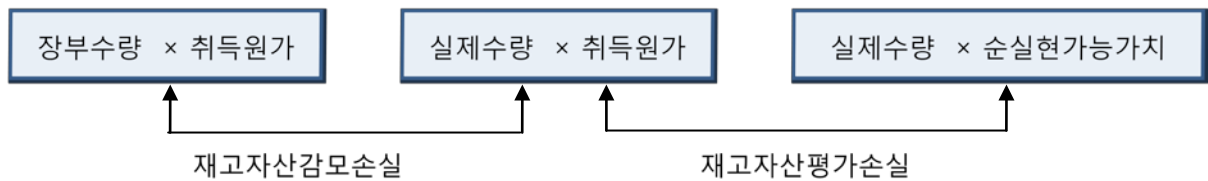
4.2 재고자산감모손실

상품 등 재고자산을 취급하다보면 파손이나 도난, 자연증발 등으로 인하여 실제 수량이 장부 수량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파손이나 도난 등으로 인하여 기말재고자산의 수량감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에는 왜곡된 매출원가 또는 기말재고자산이 표시된다.

만일 기업이 계속기록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재고감모의 발생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기말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될 것이다. 한편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재고감모의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될 것이다. 왜냐하면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기말에 남아있지 않는 재고자산은 모두 당기중에 판매되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말에 실사를 통하여 재고자산의 감모분을 파악해야 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중에 입고 및 출고수량(금액이 아님)을 기록함으로써 장부수량과 실제수량의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

전술한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재고자산감모손실의 결정과정을 표시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재고자산 평가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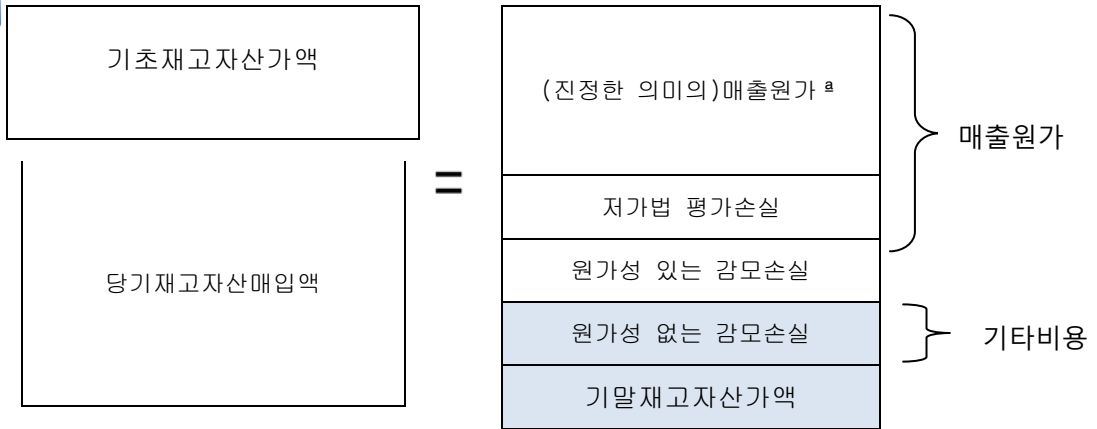


재고자산의 감모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경상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유소나 LPG충전소의 경우 휘발유나 LPG충전소의 경우 휘발유나 LPG를 차량에 넣는 과정에서 일부의 휘발유나 LPG가 공기중으로 날아가기도 하며, 종업원의 취급부주의로 휘발유나 LPG가 유출되기도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경상적으로 발생하는(즉, 원가성이 있는) 감모에 해당되며, 후자의 경우는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즉, 원가성이 없는) 감모에 해당한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경상적인 감모손실과 비경상적인 감모손실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저자의 견해로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하되, 비경상적인 감모손실이 중요하다면 별도의 비용 항목으로 구분 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재고자산감모손실(원가성 없는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정)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이 함께 있는 경우 매출원가의 계산과정을 [그림 5]와 같이 표시하면 수월하게 그 금액을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림 5]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의 계산



^a 끼워넣기 수치로 결정된다.

핵심정리

1. 재고자산에 대한 매입환출,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의 회계처리는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2. 기말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개별법, 선입선출법 및 가중평균법이 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매기 동일한 방법을 계속해서 적용해야 한다.
3. 물가가 상승할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가중평균법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 매출원가가 낮아지고 당기순이익이 높아지므로 법인세부담액이 증가한다.
4. 기말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다면 저가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한다.
5. 장부상 수량보다 실지재고수량이 적을 때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인식해야 한다.